

<여름철 자연재난 예방 및 관리 안내>

1. 2026년 여름을 맞이하며, 총회는 여전히 긴장하며 재난 구호사업을 준비합니다.

2.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, 집중호우,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, 그 규모와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기후위기의 영향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, 2026년 여름철에도 각종 자연재난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

3. 이에 각 노회에서는 소속 교회와 기관이 재난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점검, 비상연락망 정비, 취약지역 사전 점검 등 예방 활동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아래의 「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 및 관리 안내」를 참고하시어 소속 교회와 기관에 적극 안내해 주시고, 안전한 교회와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에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=== 아 래 ===

1.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,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,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.
2. 침수 등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 주변 배수로를 상시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.
3. 폭우와 강풍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 종탑과 외벽, 지붕과 축대 등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.
4. 냉방기기 사용 시, 실내의 온도차를 5℃ 내외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(적정 실내 냉방온도: 26~28℃)
5. 냉방기기 과다사용 등 전기누수로 인한 화재를 대비해 여름철 전기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
6. 교회 및 지역사회 상황을 반영해 재난 관리·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.
7. 교회 상황에 맞춘 재난관리지침을 만들어 교인들과 공유하고 교육·훈련하시기 바랍니다.
8.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하도록 교회 자원봉사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
9. 재난 발생 시 지역사회 재난 취약 계층의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관계를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.
10. 재난 발생 시 즉각적으로 기본적인 필요(음식, 물, 옷, 대피소, 의료 돌봄과 정서적 돌봄 등)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및 시설물 관리,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.

<재난 피해 보고서 작성 안내>¹⁾

1. 목적

본 안내는 국내에서 자연재난 발생하였을 때, 총회 사회봉사부가 재난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에 있어 그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며,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하여 피해자의 생명 보호와 생활안정을 회복함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2. 재난구호 지원 신청 기준

- 1) 수해(집중호우)와 직접 관련된 피해이어야 한다.
- 2) 수해(집중호우)피해 보고는 재난 발생 후 30일 이내에 총회에 접수해야 한다. 30일이 경과한 시점에 접수된 공문은 반려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3) 재난 피해보고서는 총회 사회봉사부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되, 교회/노회, 담임목회자명, 전화번호(휴대폰), 주소, 세례교인수(평균출석교인수), 교회연예산, 교회추정피해액, 노회산정피해액, 전년도 지원 유무, 피해 개요, 상세 피해 내용, 증빙자료(사진 포함), 복구 계획, 노회 사회봉사부 실사 보고 등을 필수 기입하여야 하며, 교회 추정 피해액은 견적서 붙임 등 상세하게 보고하되, 원상 복구 차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4) 재난 피해보고서에 대해서는 노회 사회봉사부 임원과 노회장의 재가를 받아 작성,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노회를 경유하여야 한다.
- 5) 피해 교회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하며 외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복구 계획을 수립하되, 교회 자부담과 노회, 타교회, 기타 지원을 명시하여야 한다.
- 6) 피해 교회의 해당노회 사회봉사부는 피해 현장 답사 등을 통해 피해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총회 사회봉사부에 보고하며 보고서에 노회 사회봉사부의 보고 평가와 사회봉사부 자체 산정피해액을 명시하여야 한다.

3. 재난구호 지원 심사

- 1) 총회 사회봉사부는 제출된 피해보고서 중 지원요청 서류가 완비된 문건만을 접수한다.
- 2) 피해 교회의 해당노회 사회봉사부에서 미리 피해를 실시, 노회 사회봉사부의 실사보고 평가와 사회봉사부 자체 산정 피해액을 명시하지 않은 문건에 대해서는 총회 실사를 시행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.
- 3) 총회 사회봉사부는 제출된 재난 피해보고서를 서면 검토한 후 실사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안에 현장 실사를 한다.
- 4) 현장 실사는 노회 사회봉사부 임원의 인도 하에 해당 지역의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 혹은 임

1) “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국내재해구호지침서”를 중심으로 한 재난 피해 보고서 작성 안내입니다.

원과 재난구호 담당 실무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재난구호 담당 실무자 단독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.

- 5) 피해 보고에 대한 지원 심사는 현장 실사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 혹은 실행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임원회에서 결의한다.
- 6) 노회에서 보고된 피해 상황이 과장되었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해당 노회에 행정경고, 지원액 삭감, 지원 취소, 기 지원된 지원금 환수 등의 결정할 수 있다.

4. 재난구호 지원금 배분

- 1) 건물 등이 노후화되어 발생한 누수, 누수로 인한 화재 등 재난의 간접적인 피해 및 차량, 피아노, 컴퓨터 등 동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2) 재난 피해로 인해 전년도에 지원을 받은 교회의 피해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.
- 3) 구체적인 재난구호는 피해 정도와 교회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적으로 배분·집행하되,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형평성 있게 책정한다. 또한, 재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아래 기준보다 더 세분화하여 분류할 수 있다.

<피해 정도에 따른 기준>

- ① A급 : 교회 및 부속건물과 사택 모두 완파된 경우
- ② B급 : 교회만 완파된 경우
- ③ C급 : 교회 및 사택의 일부가 파손(50% 이상) 또는 침수된 경우
- ④ D급 : 교회 및 부속건물 등이 다소 파손(30% 이상) 또는 침수된 경우
- ⑤ E급 : 교회 및 부속건물 등이 경미하게 파손(30% 미만) 또는 침수된 경우

<교회 규모에 따른 기준>

- ① 1급 : 자립대상교회(연예산 3,000만원 미만)
- ② 2급 : 준자립대상교회(연예산 3,000만원 이상-5,000만원 미만)
- ③ 3급 : 교회 연예산이 5,000만원 이상-1억원 미만 규모의 교회
- ④ 4급 : 교회 연예산이 1억원 이상-3억원 미만 규모의 교회
- ⑤ 5급 : 교회 연예산이 3억원 이상인 교회

- 4) 재난구호 지원금 배분은 교회와 지역사회에 한정하되, 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교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지원한다.
- 5) 재난구호 지원금 배분은 전례와 현행 지침을 기준으로 하되, 재난구호 모금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
<재난 피해 보고서 양식>

보고일 : 20 년 월 일(*필수 기재)

교회/노회*	담당목회자명*	전화번호(핸드폰)*	주소*	
세례교인수/평균출석교인수*	교회 연 예산*	교회 추정 피해액*	노회 산정 피해액*	
전년도 지원 유무(금액)*	자립대상교회 구분(자립대상교회인 경우,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)			
/금액(원)	농어촌(읍,면)()		중소도시()	대도시()
교회당/부속건물 구분	(자가) 기타()		사택 구분	(자가) 기타()
	보증금: 원	보증금: 원		
	월 세: 원	월 세: 원		
피해 개요* (해당되는 항목에 표시('O표시' 또는 '퍼센트(%)')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)				
교회당	완파()	반파()	파손()	침수()
교육관/부속건물	완파()	반파()	파손()	침수()
사 택	완파()	반파()	파손()	침수()
기 타 (예: 교회종탑파손, 교회십자가파손, 축대파손 등)				
상세 피해 내용* (피해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.)				
증빙자료(사진 등)를 필히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*				
복구 계획* (복구 기간, 재정 충당, 재정 지원 현황 등을 명시하여 자세하게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.)				
노회 사회봉사부 실사 보고*				

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 소정양식